

성 소 수 자

와

공 적 공 간

“물의인가, 무리인가”

■ 일시 : 2014년 6월 11일(수) 저녁 7시 30분

■ 장소 : 인권중심 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

사회 | 몽 (언니네트웍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발제 | 한채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퍼레이드팀장)

발제 |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발제 | 레고 (서울인권영화제 활동가)

발제 |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 주최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퀴어문화축제

■ 주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1.

퀴어퍼레이드와 공적 공간

한채운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퍼레이드팀장)

1. 퀴어문화축제의 장소 사용 거부 사례들

- 2000년 1회 퀴어문화축제 때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행사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연세대학 교 내를 걸어 행진했다. 내친 김에 신촌 쪽으로 나아가려했으나 연세대정문에 서대문경찰관이 미리 나와서 저지를 해 무산되었음.
- 2001년 2회 퍼레이드 때 홍대 앞쪽 길 사용을 경찰에서 불허함. 언론에서 경찰서에 전화를 거는 등 외부 압력을 넣어서 행사 이틀 전에 행진 허가를 받아서 진행한 바 있음.
- 2000년대 초반에 녹사평역 내의 공간에 전시화를 해보려 문의를 했지만 거부당함.
- 3회 퍼레이드를 준비할 때 이태원상가변영회를 찾아가 공식 제안을 했으나 동성애 행사라는 이유로 거절당함. 이에 상가변영회의 동의 없이 퍼레이드를 진행.
- 4회부터 종묘공원, 탑골공원, 인사동남인사문화마당, 공평동한미(시티)은행 앞, 장교빌딩 앞, 베를린광장, 한빛광장, 미래에셋빌딩 앞 등에서 행사를 할 때 성적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진 않았음. 그것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시끄러운 행사를 하는 것 자체를 아주 싫어해서 장소 사용 시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 (종묘나 탑골에서는 그곳에 상주하시는 할아버지들이 소란을 일으킨 적이 간혹 있음)
- 퍼레이드가 청계천으로 바뀌면서는 경찰에서 문화행사이므로 집회신고를 받지 않겠다고 함. 그래서 교통경찰이 나오는 해도 있었고 안 나오는 해가 있었으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교빌딩에서 경찰에 신고를 넣기 때문에 매년 남대문 정보과 형사가 나왔음. (그래서 한빛광장에서 할 때는 경찰이 아예 몰랐던 때도 있음. 다른 행사 감시하러 나왔다가 퍼레이드 행렬에 깜짝 놀라서 불법 여부를 현장에서 따지기도 함)
- 문제는 거부가 아니라 협조도 하지 않는다는 것. 매년 구청이나 시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었으나 협조 의지는 전혀 없었음. 베를린광장은 아예 담당 부서가 없어서 장교빌딩 관리실과 협상을 해서 진행해야 했고, 한빛광장에서 할 때는 중구청에 광장사용료를 지불했음. 중구청은 사용료는 받지만 광장 사용에 대한 최종 허가권은 미래에셋 건물의 관리팀에 넘긴 꼴이어서, 미래에셋 관리실과 한빛광장 미디어센터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야 구청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
- 2013년에 중구청이 한빛광장에서 하더라도 음향기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함. 무대 설치를 할 수가 없으므로 다른 장소를 구해야 했고 홍대건고싶은거리상인회 회장님의 도움으로 홍대 어울마당에서 하게 됨. 어울마당 역시 마포구청 내에 담당부서가 없었고 마포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는 것으로 법적 장치를 마련함.
- 2014년 신촌상가변영회의 적극적 도움으로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경찰의 협조가 모두 4월초에 이루어짐. 퍼레이드 행진 구간이 마포구와 겹치는 관계로 집회신고는 서울시경에 제출함. 그러나 서대문구청이 5월 22일에 행사를 6월 말로 연기하는 안을 제안했고 5월 27일에 행사승인취소 공문을 보냄.

2. 퀴어와 공적 공간

-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 (시행령 제 7조 다항) / 1997년 왕가위감독의 <춘광사설> 수입금지 결정 / 1998년 <BUDDY>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수거 명령 / 2000년 홍석천의 커밍아웃 후 방송국에서 출연 거부 / 2001년 인터넷내용등급제 퇴폐2등급 / 2002년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고시 철회 행정 소송 /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권고 / 2005년, 2008년 이화여자대학교 내 무지개깃발 도난 사건, 강의실 사용 불허 /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반대 / 2010년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방영과 반대 / 2012년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마포구 게시 거부 / 2012년 <XY 그녀> 첫 방송 후 폐지 / 2013년 홍대걸고싶은거리 내 나무무대 사용 불허
- 공적 공간에서 공적 존재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재현되는 것에 대한 거부
-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까지의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것은 다소 모호한 추측에 기반해 있었음.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면 오히려 이길 수 있었음. 그러나 논리의 빈약에도 불구하고 점점 동성애혐오와 반대가 조직화되고 있음.
- 반대세력의 목표는 공적 공간에서의 재현은 최대한 막고, 공적 공간에서의 금지와 처벌을 유지하고 싶어함.
- 하지만, 공적 공간에서의 싸움은 그들의 정체도 공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쪽에 유리하지만은 않음.
- 논리의 빈약과 미적 결여(??) 때문에 지금의 조직화는 반대 진영의 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의 쇠락의 시작점으로 보임. (비록 당분간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 정치세력화를 도모할 것인가?

3. 공간의 차별전략

- 두 단계의 차별 전략이 있다. 동성애 혐오가 강하다고 해도 인종 차별처럼 백인/흑인 전용 공간과 같이 ‘공간 분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성적체성이 피부 색깔처럼 한눈에 구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별 전략은 동성애자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드러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성애 중심적인 공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택한다. 그래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억압의 절차는 ‘공간 분리’보다 침묵/ 위장을 먼저 요구한다. 그들은 모른 척 하는 것으로 존재를 지운다. 그런데도 자꾸 눈에 띄면 이어 색출/퇴출 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는 순서를 취하게 된다. 치료를 권하고 회개를 강요하고 처벌을 가하고... 이런 억압과 색출에도 불구하고 계속 ‘커밍아웃’으로 저항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일시적인 공간 할애’라는 걸으로는 다소 유연하고 진일보해 보이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 이는 다소 평화로운 협정처럼 보일 수도 있다. 동성애자가 우리 직장에 있는 것 까지는 괜찮다. 너무 티내지만 않으면. (미국 군대내의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정책처럼) 동성애자가 퍼레이드를 할 수도 있다. 그날 딱 하루라면. 동성애자가 출연하거나 동성애를 다룰 수도 있다. 예능에서라면...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누고 다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자신들의 영역을 못박아둔다.
- 올해 퀴어 퍼레이드는 행사장에 난입하고, 행진 코스에 무대와 의자를 배치해서 막고, 도로에 누워서 막는 방식을 썼지만 그들은 계속 이런 방법을 쓰게 될까? 그들의 명백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신촌동성애반대청년연대’는 시간이 흐르면서 동성애축제 참가자들은 분산되었고 난잡한 카 퍼레이드를 하지 않고 열시가 넘어 조용히 연세로를 빠져나가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말로 애써 자신들이 저지에 성공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날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들은 내년에 똑같은 기획을 할 수 있을까?

- 한국에서 동성애자인권운동 20년, 퀴어 퍼레이드의 역사 15년... 그런데 왜 이제야 저들은 이토록 반대하는 것일까? 우리가 커져서가 아니라 저들에게 다른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왜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눈엣가시처럼 된 것일까.
- 질 발렌타인(Gill Valentine)은 공적 공간이 이성애 중심으로 구축되었음을 드러내고 균열을 일으키는 동성애자의 실천을 ‘가시성의 증가, 공적 공간의 점유, 성적 시민권에 대한 주장, 자신감의 증가’로 설명한다.
- 이제 낮설지만 바짝 날이 선 질문, 즉 “공적 공간은 과연 누구의 공간인가?”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던져야 한다. 공적 영역의 제한적 확보만을 허용하면서 관용인 체하는 위선을, 편견과 혐오가 휘두르는 폭력에 눈감으면서 중립인 척하는 허세를 폭로하는 저항이 될 것이다. 아이리스 영(Iris M. Young)의 말대로 공적 공간이 ‘차이’와 조우하는 공간이 되려면, 먼저 ‘차이’ 자체들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체성에 기반을 둔 공간 분할이 아니라 공간의 새로운 정체화다. 공간을 할당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공적 공간의 의미와 역할을 재구성하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4. 역대 퀴어퍼레이드 연표

공식행사명	주최명	공식슬로건	전체 행사기간	퍼레이드	퍼레이드집결지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0	무지개2000 공동조직위원회	크게 외쳐라 “나는 동성애자다.”	9월 8일 ~ 9월 9일 (연세대학교)	8월 26일 (대학로) - 행렬 70여명	대학로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1	퀴어문화축제 집행위원회	한걸음만 나와 봐, 놀자	9월 14일 ~ 9월 16일 (홍대 일원)	9월 15일 (홍대앞) - 행렬 200여명	홍익대 대운동자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2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멈추지마, 지금부터야. 두근두근!	6월 4일 ~ 6월 11일 (이태원 / 종로)	6월 8일 (이태원) - 행렬 400여명	녹사평역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3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움직여!	6월 20일 ~ 6월 29일 (종로)	6월 21일 (종로) - 행렬 600여명	탐골공원 - 한미은행앞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4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	6월 17일 ~ 6월 29일 (종로)	6월 19일 (종로) - 행렬 500여명 / 폭우	종묘공원 - 인사동남인사문화마당
제6회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5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퀴어절정	5월 27일 ~ 6월 10일 (종로, 홍대)	6월 5일 (종로) - 행렬 800여명	종묘공원 - 시타은행앞
제7회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6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위풍당당 퀴어행복	5월 30일 ~ 6월 11일 (종로, 홍대, 이태원)	6월 10일 (종로) - 행렬 600여명 / 폭우	종묘공원 - 시타은행앞
제8회 2007 퀴어문화축제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THIS IS QUEER!	6월 2일 ~ 6월 10일 (종로, 홍대, 이태원)	6월 2일 (청계천) - 행렬 1,000여명	베를린광장
2008 제9회 퀴어문화축제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작렬! 퀴어 스캔들	5월 31일 ~ 6월 8일	5월 31일 (청계천) - 1,300명	베를린광장
2009 제10회 퀴어문화축제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삼년감수	5월 30일 ~ 6월 13일	6월 13일 (청계천) - 1,500명	베를린광장
2010 제11회 퀴어문화축제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outing: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6월 2일 ~ 6월 12일	6월 12일 (청계천) - 1,000명 / 폭우	베를린광장
2011 제12회 퀴어문화축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퀴어예찬	5월 28일 ~ 6월 8일	5월 28일(청계천) - 2000명	한빛광장
2012 제13회 퀴어문화축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퀴어연가 [가족: 연을 맺다]	5월 24일 ~ 6월 2일	6월 2일(청계천) - 3000명	한빛광장
2013 제14회 퀴어문화축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더 퀴어(THE QUEER), 우리가 있다	6월 1일 ~ 6월 16일	6월 1일 (홍대) - 5천명 / 1만명	홍대 어울마당
2014 제15회 퀴어문화축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6월 3일 ~ 6월 15일	6월 7일 (신촌) - 6천명 / 1만5천	신촌 연세로

2.

제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경과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경과보고

[도심공원은 모든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일부 소수인을 위한 특정행사는 사용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제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2.28기념중앙공원의 청소년광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를 하여 사용가능한지를 확인했었고, 28일은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장소협조요청 공문을 3월 28일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측은 공문 발송 1시간도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답을 유선 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유를 물었더니 “거기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장소여서 동성에 축제는 안 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불허의 이유를 공문으로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의 회신은 무척 빨랐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30분정도가 지났을까... 회신에는 “... 신청하신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원사용 승인 건을 검토한바, 도심공원은 모든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일부 소수인을 위한 특정행사는 사용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로 간단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6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의 공원사용은 불허가 되었습니다.

[불허에서 공원사용승인으로]

저는 불허의 사유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공원은 모든 시민들의 휴식처이다. 청소년들이 많이 다닌다.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들만 승인한다” 등. 불허의 관련 규정을 물었더니 “관리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내부규칙을 세우고 있고, 소장님과 의논한 결과다” 였습니다.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내놓은 대답이라는 게 법적 근거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이라니 저는 곧바로 대구지역의 인권운동단체들과 대책위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즉각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1. 대책위가 시설관리공단의 상급조직인 대구시청 공원녹지과에 공개질의서 발송, 면담요청
(이때부터는 몰상식한 시설관리공단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전화수신을 차단하고 시청 녹지과에 '대구시의 입장을 밝혀라'라고 요구)
2. 동시에 국가인권위에서 재검토 요청의 압박
3. 진선미 국회의원실에서의 재검토 및 공개질의서 발송
4. 친분이 있는 언론에 유선 상으로 제보, 공개질의서 보낸 것까지 기사화하여 공론으로 올림

위의 내용으로 불허가 난지 이들 동안 초기대응을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순순히 허락지 않던 시청은 질의서의 답변은 물론, 국장을 비롯해 해당과장과 직원, 시설관리공단의 소장까지 포함한 면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면담에는 저와 활동가들 4명 이렇게 진행되었고, 면담에서 가장 상처가 컸을 성소수자 당사자에 대한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 하였습니다. 면담 다음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장소사용에 관해 재논의를 하겠다고 전화가 왔었고, 그 다음날인 4월 2일에 [공원사용승인] 공문을 우리 쪽에 보내왔습니다. 사실 우

리는 이 판을 더 키울 생각으로 승인 공문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와 조금 싱겁게 일이 끝난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에게 공공과 공익이란_또 하나의 시민]

불허에서 승인으로 재결정이 내려진 것은 환영할 일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성소수자 관련하여 쉽게 행동하지 못 할 경고성도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큰 숙제를 안은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허가 난 그날 우리는 '성소수자'가 '공익'에 반하는 집단이 되었고, 청소년들이 많은 장소에서는 행사를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간이 저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불허가 될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관리규정만으로 대여를 불허했다는 것은 세상의 지독한 편견과 낙인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는 그나마 불허에서 승인으로 돌아서는 좋은 예(?)가 되었지만, 서울의 서대문구청의 종잇장처럼 가벼운 행정 처리는 우리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민의' 시민이 될 수 없는 것인지, 왜 또 다른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PS. 대구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 '성소수자에게 공공장소란 어떤 곳인지'를 주제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번 토론회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많이 아쉽구요.. 서울에서의 토론회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다주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대구에서 배진교 드림 -

6월 28일 서울에서 대구로 '퀴어버스'가 달립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사랑을 외쳤던 여러분!

6월 28일 개최되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참석을 위해 '퀴어버스'가 서울에서 대구로 운행됩니다.

퀴어버스 1 - 당일치기 일정

가는편 - 6월 28일 오전 8시 서울 출발

오는편 - 6월 28일 오후 8시 대구 출발

참여비 - 27,000원

퀴어버스 2 - 1박 2일 일정

가는편 - 6월 28일 오전 8시 서울 출발

오는편 - 6월 29일 오후 2시 대구 출발

참여비 - 35,000원

신청 - queerbus@gmail.com

입금 - 우리은행 1006-201-222229 (예금주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신청 및 입금 시한 - 2014년 6월 17일 오후 6시까지

* 입금 후 퀴어버스 1/2 표기와 입금자 명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퀴어버스는 버스 편당 참여인원이 30명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해당 편은 취소됩니다.

* 입금 금액 중 실 소요경비 지출 후 잉여금은 대구퀴어문화축제로 전달됩니다.

* '퀴어버스'는 교통편만 제공됩니다.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2.28기념 중앙공원
사용 협조조건에 대한 회시에 대한 공개질의 및 면담요청

- 질의1. - 시설관리공단 공문(도심공원-367 / 2014. 03.26) 답변서에 적힌 ‘일부 소수인의 행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질의2. - 지난 2013년 시설공단의 2.28공원 공간 대여 내역은 총 121건입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광장은 군악대 공연, 성탄기념 찬양전도, 5.18광주민중화운동 기념문화제, 스윙댄스 강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허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한 2.28기념 중앙공원의 공간대여가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확인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허가사항이라면 또 어떠한 기준으로 허가하는지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3. - 또한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없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28기념 중앙공원 담당자는 불허한다고 전화통화로 답변하였습니다. 위의 축제들과 비교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질의4. -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28기념 중앙공원을 규율하고 있는 관련 법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9장 보칙, 제5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보더라도,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위한 장소 사용을 불허할 타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의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위한 2.28기념 중앙공원 사용에 대한 불허방침에 대해서, 상급관리기관인 대구시의 공식적인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약 대구시도 대구시설관리공단의 입장과 같이 2.28기념 중앙공원 사용에 대한 불허방침이 동일하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관련 법 혹은 관리규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 질의5. -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구시 관리기관인 대구시설관리공단의 2.28기념중앙공원 사용불하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성소수자이기에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를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자행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귀 대구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질의6. - 대구시설관리공단의 2.28기념 중앙공원 불허방침으로 인하여 제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대구시민과 대구지역 인권활동가 그리고 대구지역 성수자는 사회적 차별에 기인한 반인권행정으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공식적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대구지역 인권단체

2.28기념중앙공원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① 시설관리공단 공문 답변서에 적힌 ‘일부 소수인의 행사’ 의미는 ?

→ 2.28기념중앙공원은 2.28학생 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대구의 대표적인 도심공원이며 특히 젊은층의 이용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활기찬 문화행사 위주로 활용되고 있는 공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쿼어문화 축제는 아직까지 대중화 되지 않은 일부를 위한 행사로 판단하였으며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② 2013년 시설관리공단의 2.28공원 공간대여는 121건이며 군악대공연, 성탄기념 찬양전도, 5.18광주민중 화운동 기념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허가한 기준과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허가사항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허가하는지 ?

→ 장소사용 승인은 신고만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행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하는 사항으로 모든 행사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상행위, 개인적홍보, 소음을 심히 발생시키는 행사, 기타 주변이나 시민에게 민원의 소지가 우려되는 행사 등 공익성이 결여된 행사는 공원사용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구청에 공원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에서 언급한 위 행사들은 공원 이용객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등 도심공원에서 할 수 있는 공익적인 행사로 판단하고 사용을 허가하였던 것입니다.

③ 대구쿼어문화축제는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없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불허한다고 전화로 답변하였으며 질의 2 축제와 비교하여 대구쿼어축제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

→ 대구쿼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들의 축제로 앞으로 인권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문화를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기에는 시민들의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서울시민 인권의식조사 등, 2012) 시민·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인 도심공원에서 행사를 할 경우 인식을 달리하는 시민들의 다른 의견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④ 관련법의 금지행위를 보더라도 본 축제를 위한 장소 사용을 불허할 타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의 공원사용 불허방침에 대한 상급관리기관인 대구시의 공식적인 의견과 대구시에서도 시설관리 공단과 같은 불허방침이 동일하다면 관련법 혹은 관리규정의 근거는 ?

→ 공원사용은 사전에 관리기관에 사업(행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검토 후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누구

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의 불허방침은 조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충분히 검토할 수 없었던 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외에는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⑤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또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사용불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성소수자이기에 차별과 인권침해를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자행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

→ 공원사용 불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원사용을 불허한 것은 성소수자이기에 의도적으로 차별(불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약자, 성소수자 등이 차별행위를 받거나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 ⑥ 공원이용 불허방침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대구시민과 인권활동가 그리고 대구지역 성소수자는 사회적 차별에 기반한 반인권행정으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구시의 공식적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

→ 이번 일로 조직위원회와 관계자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원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공정하게 처리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조직 위원회와 인권단체에서도 이번 일에 대하여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시 환경녹지국장 면담에 대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및 인권단체 입장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인권단체는 이번 2.28기념 중앙공원 장소사용 관련 대구시설관리공단의 불허 사례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에 기반한 반인권적 행정이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질의서 4번에 대한 답변으로 사전 구체적인 행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직위원회에게 이번 사건 발단의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처음부터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였고, 장소 사용 협조 공문 이외에 어떠한 기타 서류에 대한 언급 및 요청이 없었습니다. 또한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용 불허 통보를 하였고, 불허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환경녹지국장과의 면담에서 조직위와 인권단체는 대구시의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구시는 행사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여 성소수자 당사자 및 축제 조직위와 인권단체에 상처를 주고 불미스런 마찰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를 하였습니다. 조직위와 인권단체의 질의서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환경녹지국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회신하고 성실하게 면담을 임해 주어 이번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발전은 다양한 표현에 대한 보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공원과 광장에서 자발적 표현과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대구시 공무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공원과 광장이 행정상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3.

공적공간에서 함께 영화보고 이야기하기

레고 (서울인권영화제 활동가)

광장에서 말하다 <익숙한 그러나 너무나 낯선 ‘성폭력’>

성(혹은 섹슈얼리티, Sexuality)은 아직까지도 개인의 일로만, 그 중에서도 아주 사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을 더 이상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의 이면에 감추어진 견고한 성별 이분법, 이성애중심주의와 그로 인한 성별 위계, 또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성별 권력 구조를 ‘낯낯’이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족성폭력의 경우, 한국 사회의 가족 이데올로기가 성폭력을 작동시키는 힘과 공모합니다. 이래도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서울인권영화제가 성과 성폭력, 친족성폭력을 정치적인 문제로서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광장에서.

위의 인용문은 18회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인, “토크 인 플라자(광장에서 말하다)”를 소개한 글이다. 이 프로그램은 위에서 드러나듯이 ‘공적’인 공간에서 ‘공적’으로 말하기 힘든 문제를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특히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문제는 공적으로 거론하기 힘든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다. 그러한 성에 대한 금기는 공사 이분법에 근거하여 공적인 문제가 될 수 없음에서 곧 사적인 것으로 치환된 것이다. 이는 또한 그 근저의 위계와 권력 구조를 은폐함으로써 성이 공적 공간으로 들어서는 것을 아주 정당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한다.

권력 관계는 곧 공간의 점유를 반영하기도 한다. 가령 지하철 좌석에서 당당하게 다리를 벌려 더 많은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체차이를 근거로 다리를 벌려 앉는 자세를 정당화하고 사회에서 그것이 수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리벌림을 실천하는 남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많은 공간을 점유한다. 정당화의 과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쉽게 여러 가치를 정당화하고 실제로 그들은 많은 곳에서 더 많은 공간과 위치를 점유한다.

이 글은 서울인권영화제가 등급분류를 거부하며 표현의 자유 운동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활동하는 것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공적공간에서 인권영화를 함께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공적공간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앞부분에서는 (영화제가 싸워온 모든 사건들을 기록할 수 없으므로) ‘거리상영’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담을 것이다. 이어 뒷부분에서는 글 첫 머리에 잠시 언급 한바와 같이 인권영화 속 어떤 금기시 되는 이야기들을 광장에서 관객들과 함께 펼쳐냈던 순간들에 대해 담고자 한다.

공적공간에서 인권영화를 함께 보는 것

‘공적 공간’이라는 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공적’이니 ‘공공’이니 ‘공익’이니 하는 말이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지 먼저 물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는 그런 말들이 어떻게 다시 해석되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서울인권영화제도 그렇지만, 여러 인권단체들은 특정 공간 사용에 대한 배제의 경험이었다.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이야기 되는 ‘공적 공간’에서의 거부 경험과는 조금 달리 흔히들 이야기 하는

‘공적 공간’에 무조건 사용신청을 하기 보다는 특정 공간을 선택하여 그 공간을 어떻게 ‘공적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하기도 한다.

서울인권영화제는 영상산업과 관계없는 비영리 독립제작 영화에 대해서도 상영등급분류를 강제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억압으로써 명백한 사전검열이라 판단한다. 또한 국가 행정기관의 ‘추천’을 명백한 사전 검열로 판단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을 거부해 왔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인권영화제는 국가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영관을 대관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광장에서, ‘공적 공간’에서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2013년 3월 26일, 서울인권영화제가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했으나, 27일 서울광장사용 신고를 담당하는 서울시청 총무과는 메일을 통해 서울인권영화제가 서울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비법상의 상영등급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공적 공간’임을 표방하는 광장사용에 대해 서울인권영화제는 2009년 6월 3일(5일 개막)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청계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변경(취소)사항 알림> 공문을 우편으로 받게 되었다.¹⁾ 이후 긴박한 논의와 문제제기 그리고 기자회견(4일)으로 2009년 6월 4일 저녁 8시경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청계광장 사용 승인 알림> 공문이 팩스로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 도착하게 되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 사용허가 취소를 다시 취소하게 되는 사건을 만들었다. 하지만 6월 5일(개막)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종로경찰서 경비과(시경의 지휘를 받음)의 방해로 거리상영 준비가 늦어지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취소결정 이유는 2008년 부터 2009년 하반기 까지 이어오던 촛불과 2009년 용산참사의 흐름 속에서 영화제가 “불법집회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영화제 활동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공적 공간’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공유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일이다. 하지만 기존의 ‘공적’이나 ‘공익’에서 배제되는 존재들이 있다면 ‘공적’이나 ‘공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시 질문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적의 반대는 사적이고 공익의 반대는 사익인가? 이렇게 선긋기 방식의 공/사 이분법은 ‘공’의 공간에 있지 못하게 하는 어떤 존재들을 선별해 가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즉, 사회적 관계가 발생하는 공간은 누가 장소 안에 있고 누가 바깥에 있는가 심지어 누가 그곳에 있도록 허용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공간은 점유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그 공간에서 누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공적 공간’을 ‘공적’인 것들이나 ‘공익’의 것들이 채워야 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공적’이고 ‘공익’을 재구성해야만 한다. 공간을 점유하는 그 어떤 존재도 존재 그 자체로 ‘공적’이거나 ‘공익’을 표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존재들은 구성체들이므로 정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존재들이 점유하는 공간은 정치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공적공간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언어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회적 청자 즉, ‘장’이 있어야 한다. 각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각자의 기억들을 만들어간다. 영화 속 이야기 뿐 아니라 그 영화를 바라보는 나를 구분하기 힘든 지점에서 나의 체험들이 경험이 되고 다시 기억이 된다. 이 과정에서 영화제는

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청계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변경(취소)사항 알림> 결정은 2009년 6월 1일.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와 어떻게 이야기 하는가에 중심을 두면서, 사회적 청자로서의 ‘장’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이 흐름에서 한 작품(장편)을 더 상영 하는 것 보다 ‘광장에서 말하다’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2013년 18회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진행한 ‘광장에서 말하다’는 글의 머리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익숙한, 그러나 너무나 낯선 ‘성폭력’>이었다. 이어 2013년 19회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진행한 ‘광장에서 말하다’는 다음과 같다.

<내 몸 여기 있어요>

여성의 몸은 내 몸임에도, 빈번하게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생산 노동, 재생산 산업이 전 지구적인 범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여기의 내 몸들이 하나의 전체인 몸이 아니라 단지 아기를 만들어 키우고 낳는 기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서울인권영화제는 여성들이 광장에서 내 몸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 하는 장을 펼쳐봅니다. 광장에서.

<같은 공간, 다른 기억들>

한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꾸듯, 같은 공간에 있는 서로 다른 ‘나’들은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같은 경험도 다르게 기억합니다. 팔당이라는, 두물머리라는 공간을 담은 두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같은 걸을 하는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몇 배가 곱해진 수만큼의 기억들을 또 하나의 같은 공간, 여기 광장에서 펼쳐봅니다.

서울인권영화제는 줄곧 감독과의 대화가 아닌 관객과의 대화 또는 활동가와의 대화를 거의 모든 상영작에 붙여 진행 해 왔다. 이 흐름 속에서 2008년, 서울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 운동을 지켜나가기 위해 거리상영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적 공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광장’에서 금기시 되었던 말들을 하게 되었다. 특히 2013년 18회 서울인권영화제부터는 ‘토크 인 플라자(광장에서 말하다)’를 프로그램하게 된다. 기존 관객과의 대화가 20분 내외의 질의응답 형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판단, ‘광장에서 말하다’는 1시간 이내로 구성하여 말할 수 없었던 것들, 이야기 되지 못한 것들을 입 밖으로 꺼내어 ‘광장’에서 관객, 인권활동가, 감독이 함께 구성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토론회보다는 가볍지만 관객과의 대화보다는 무거운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당해 영화제에서 집중하여 이야기 해 보고자 하는 작품과 인권사안을 쟁점으로 둔다.

4.

순수한 문화제가 존재 가능할까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문화는 불온하다

작년에 어느 장기투쟁사업장을 지지하는 문화제를 기획한 일이 있었다. 문화제가 진행될 장소는 대한문 앞이었는데 당시 대한문 앞은 경찰과 충돌이 빈번이 일어나던 시기여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회신고를 내기로 했었다. 그 당시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자 담당 경찰이 신고서를 보면서 나에게 “순수한 문화제가 맞으시죠?”라고 물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이 주는 불편함 때문에 조금 머뭇거리긴 했지만 특별히 이 일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아마도 문화제를 진행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순수한 문화제가 맞아요.’라고 대답을 했었다.

‘순수한 문화제’라는 말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허구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제가 다른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도 없이 이뤄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혹여 순수한 문화제가 실재 존재한다면 문화제 참가자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기계적으로 문화공연을 하고, 문화제를 보러온 사람들은 왜 하는 지도 모르는 공연을 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문화는 인간들의 정신적 가치와 그에 따른 행위를 통해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단순히 반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고, 대항하며, 변화를 추구한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지배 질서에 저항하는 비판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비판적 기능을 잃어버린 문화는 이내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세상과 단절하고 순수예술을 지향했던 예술들이 결국은 예술적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사례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창조성도 이런 비판적 정신에서부터 발현된다.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기존의 것을 파괴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에 순응적인 문화는 일시적으로 아름다울지는 몰라도 창조성의 부재로 인해 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 문화는 비판과 저항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는다. 물론 비판과 저항의 내용들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렇다고 문화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체제유지를 하려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문화가 가지고 있는 비판적 기능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와 개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고, 그것이 국가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문화는 모든 것을 제도적 틀 안에서 가둬둘 수는 없다. 문화는 일정부분의 자립성을 확보해줄 때야 비로소 그 가치가 힘을 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퀴어문화축제를 비롯한 몇몇 행사에 대한 장소 사용승인 불허 건은 관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쩌면 서로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일지도 모르겠다. 성소수자 문화는 기존의 가부장적인 성윤리에 대한 저항을 뿌리로 둔 문화적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 문화는 다른 어떤 문화들보다 더 문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지역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이 사는지를 나타내는 ‘게이지수’가 높을 도시일수록 문화적 창조성이 높고, 하이테크 산업이 발달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사회는 성소수자 문화가 중요한 문화적 자산의 하나이고, 우리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적 공유가 필요하다.

문화적 다양성으로서의 성소수자 문화

유네스코가 2005년에 제정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에서는 문화다양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간에 전해진다.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유네스코는 이 협약을 통해서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긍정하고, 문화다양성을 글로벌 문화의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정한 문화다양성의 정의에 의하면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나 민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서로 공생의 필요성을 미래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 사회 안에서는 국가, 종족, 인종, 이주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영역 외에 성차, 연령, 성적체성 등과 같은 문화정체성 영역과 하위문화, 독립문화, 비주류문화 등과 같은 문화예술 영역 같은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문화다양성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문화의 다양한 차이와 공존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서 올해 5월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이 법에서도 문화다양성을 다문화로 이해하는 방식의 한계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이 법의 주요 대상이 되는 이주민들도 보호·관리의 대상에 그치고 있지만, 그 외에 우리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문화와 규제

최근 우리사회는 보수정권 하에서 표현의 자유의 상황에 심각한 수준의 퇴보가 진행되어 왔다. 유엔 표현의 자유보고관 프랑크 라뤼는 2011년 보고서에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은 최근 몇 년간, 특히 2008년의 촛불시위 이후로 줄어들고 있음에 주목 한다”고 밝힌바 있다. 문화산업 쪽으로는 정치적 표현물, 폭력물, 섹슈얼리티와 같은 내용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어 오고 있다. 참여정부시절에 이미 허용되었던 내용들조차 이제는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경우도 허다하다.

영화, 게임,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규제와 처벌로 인해 많은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창작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위축효과로 인해 스스로 검열하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법”의 개악으로 인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애니메이션 쪽 업계의 경우, 회사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하는 경우로 혼란 사례가 되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문화는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일정부분의 자립성이 확보가 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 식의 규제 방식은 그러한 문화의 본질을 부정하고, 문화산업 전체를 고사시켜서 전혀 위협하지 않는 그리고 전혀 감동도 재미도 느낄 수 없는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결국은 그들이 생각하

는 문화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문화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싸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 표현물들은 그 싸움의 최전선에 있어 왔다. 동성애나 성소수자의 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은 결국 문화 전반의 걸친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글을 마치며

그 동안 성소수자와 관련된 담론들은 인권이나 개인의 기본권의 측면에서 주로 접근이 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한국사회 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존재가 싫는데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성소수자 혐오자들과는 마치 뱀비우스의 피처럼 끝나지 않는 논쟁의 트랙을 반복해서 돌고 있다.

이러한 끝없는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인 해결과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인권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때는 분명히 설득력에 한계가 보이는 지점이 있다. 오히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좁은 의미가 아닌 광의의 의미에서 ‘문화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이 확대될 때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과 성소수자들의 문화가 어우러지며 우리사회의 문화가 더 풍성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이론적 연구와 그 이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과 같은 노력들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